

(앞쪽)

제 호

야생생물 포획·채취 등 허가증

허가 받은 자	성 명		생년월일	
허가사항	종 류			
	수 량			
	목 적		방 법	
	기 간	. . . ~		
	포획·채취 등 구역	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등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준수사항

1.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등을 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.
2. 포획·채취 등을 한 야생생물은 포획·채취 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기 전에 해당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지역이 속한 시·군·구 밖으로 반출하거나 가공하여서는 안됩니다.
3. 폭발물·극약·독약 또는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.
4. 포획·채취 등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

